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2 . 1 0 . 6 (목)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 제안이유

- 2023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출연 기관명	사업명	출연 예정액	비고
계		4개 기관	8개 사업	15,970	
1	문화예술과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지원	5,650	
2	문화예술과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500	
3	문화예술과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연수환경 개선	500	
4	문화예술과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	2,497	
5	문화산업과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운영지원	500	
6	문화유산과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	300	
7	문화산업과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1,867	
8	문화산업과	문화엑스포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4,156	

나. 전년 대비 출연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예정액 (A)	2022년도 출연액 (B)	증 감(A-B)	
			금 액	증감율
계	15,970	15,385	585	3.8%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지원	5,650	5,400	250	4.6%
한국국학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500	500	0	0.0%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연수환경 개선사업	500	500	0	0.0%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	2,497	2,385	112	4.7%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운영지원	500	500	0	0.0%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	300	300	0	0.0%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1,867	1,644	223	13.6%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4,156	4,156	0	0.0%

4. 근거법령 (붙임 참조)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다.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라.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

마.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목적 및 근거는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 소관】

-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나,
- 위 조례의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이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는 출자에 대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중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56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54억원 보다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증액요인으로는 기존 직원의 임금 및 수당 인상, 신규 채용 인건비 반영과 퇴직급여 총당금 증액, 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국국학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아·태기록유산,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의 국내 최대 국학자료 소장기관으로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및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만큼, 향후 예산심사 시 추계를 걱정하게 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 한국국학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출연금은 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위 사업은 본관동 화장실 개보수, 전기실 노후 수변전 기기 교체, 자동안내(ARS) 시스템 교체 등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 한국국학진흥원 시설물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인 에어컨 등 장비 및 물품 교체 건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문정신연수원 연수환경 개선>

- 한국국학진흥원 내 인문정신연수원 연수환경 개선에 대한 출연금은 2022년도에 이어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인문정신연수원 연수환경 개선 사업은 내부 로비, 숙박 및 식당 시설, 강의실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속기관인 인문정신연수원은 2007년에 개원한 연수시설로서 전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향후 도민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수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북문화재단 소관】

-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

- 경북문화재단¹⁾(문화예술본부, 사무처)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1) 2020.1월 경북문화재단 업무개시(2019.7.1. 경북문화재단연구원 법인 정관 변경허가로 통합),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소재

금은 2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8,5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및 수당 증가분, 퇴직급여 일부 편성분을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경북문화재단은 경북 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 심사 시 인건비 추계가 타당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운영지원>

- 한국한복진흥원²⁾ 운영지원에 대한 도 출연금은 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경상북도와 상주시 간 출연금 분담협약 체결 ('17.11월)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금 산출근거는 인건비(급여, 수당 등) 3억 8,300만원, 일반운영비 6억원으로서 2021년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이 경북의 전통섬유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한복산업 육성과 지역 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운영비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예산 심사 시 인건비 편성 및 운영비 편성내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

- 문화재연구원³⁾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은 3억원으로 세부내

2) 2021.4월 개원,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591 소재

3) 1998.2월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개원,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소재

역은 박물관 운영비 2억원, 청사운영비 1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운영지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문화재연구원 시설에 대한 청사 유지 보수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문화재연구원의 청사 유지 보수 및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체 수익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소관】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⁴⁾에 대한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은 1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4,4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용역비, 사회보험부담금, 성과급 등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2013.4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 / 2019. 8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본원) 안동시 영가로 16 소재

- 콘텐츠 산업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경북의 문화산업을 지식 기반 첨단산업 및 융복합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출연의 필요성으로 볼 때 운영비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인건비, 용역비 등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엑스포 소관】

- 문화엑스포⁵⁾에 대한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 문화엑스포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은 4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출연금의 세부 산출내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성과급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문화엑스포 개최⁶⁾와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상시 개장을 통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테마파크 운영으로 지역 관광객 유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1996. 12월 법인 설립, 경주시 경감로 614 소재

6) ('13년)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15년)실�크로드 경주 2015, ('17년)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6.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출연금이 증액(한국국학진흥원 250백만원, 경북문화재단 112백만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223백만원)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중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 및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비용,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문화엑스포의 개최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상시개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문화엑스포(이하“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6.05.26.>

제2조 (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재단에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④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신설 '16.05.26.>**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사업수행과 제4조의 기금 조성 및 재단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6.05.26.>**